



#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이해

**Oct 8<sup>th</sup>, 2020**

***Foreign Investment Ombudsman***

FOREIGN INVESTMENT  
**OMBUDSMAN**

---

# Contents

---

1

2020 외국인투자 관련 개정사항

2

외국인직접투자제도

3

외국인투자 지원제도



# 2020 외국인투자 관련 개정사항

#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정	시행일	개정 내용
외국인투자촉진법	개정 : '20. 2. 4 시행 : '20. 8. 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(제2조)</li><li>-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자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 (제2조)</li><li>-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대상 추가 (제6조)</li><li>-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목 조항 정비 (제9조)</li><li>-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·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개선 (제13조)</li><li>-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·제품 사업 추가 (제14조의2)</li><li>-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·정비 (제18조 및 제18조의 3)</li><li>-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 (제27조)</li></ul>

#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정	공고/시행일	개정 내용
<p>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(산업부 공고 제2020-542)</p>	<p>공고 : '20.9.10 시행 : '20.9.10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금지원 요건 등 상향 입법(제5조) : 외촉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</li> <li>- 첨단산업 R&amp;D 센터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국비 부담확대 (제4조) : 10%p 상향</li> <li>-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분 평가체계 구축 (제8조, 제18조) : 사전평가제도 도입 및 별도계좌 운영 등</li> <li>- 일시지급의 경우 이행보증서 징구 근거 신설 (제13조 ④)</li> </ul>
<p>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(산업부 공고 제2020-541)</p>	<p>공고 : '20.9.10 시행 : '20.9.10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 등 관련 상향 입법(제13조, 제14조) : 외촉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3항~제6항, 외촉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</li> <li>- 입주심의 절차 개선(제13조) : 평가위원회 심의</li> <li>- 대학 내 첨단 R&amp;D센터를 서비스형외투자지역 지정 시 임대료 지원 확대(제42조) : 임대료 보조 비율 50%에서 75%로 상향</li> </ul>



## 외국인직접투자제도

#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용어

---

## (1) 외국인

- 외국의 국적 가지고 있는 개인
-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(외국법인)
- 대통령령 상 국제경제협력기구 :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 대행기관, 개발금융업무 취급 국제기구(국제부흥개발은행 · 국제금융공사 · 아시아개발은행등), 대외투자업무 취급 대행 국제기구

\*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(거주지국 영주권 취득 or 영주권 갈음 체류허가를 받은 자)에 대하여 외촉법상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함 (법 제2조②)

## (2) 외국투자가

외국인투자촉진법상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

## (3) 외국인투자기업

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

## (4)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

외국인학교, 병원, 약국,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위한 시설 운영자

#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용어

## (5) 출자목적물

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- ①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
- ② 자본재
- ③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(果實)
- ④ 산업재산권, 대통령령 상 지식재산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
- ⑤ 외국인이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 폐쇄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 **OR** 외국인이 주식 등 소유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따라 외국인에게 분배되고 남은 재산
- ⑥ 장기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**차입금 이자는 출자 목적물 X**
-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(외국 증권시장 상장된 외국법인주식, 법이나 「외국환거래법」상 외국인 소유 주식)
-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**해외부동산 현물출자 X**
-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(외국환거래법 및 외촉법상 외국인이 소유 대한민국국민 등이 경영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 처분대금)

#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

---

## (1)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

- 투자금액 1억원 이상 &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·출자총액 10%이상 소유

## (2) 장기차관

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 차관

-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
- 해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 기업
- 외국투자가
-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 기업

## (3)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

-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수립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하는 것
- 그밖에 비영리법인출연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로 인정

## (4)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(\*)을 공장 신·증설 등에 재투자

\* 미처분 이익잉여금: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



#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

---

- **조세지원** : 외국인투자촉진법(제9조),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(기획재정부 고시 2017-10)
  - 국세(법인세, 소득세 – 2018.12.31까지 조세감면 신청분),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), 관세 등 감면
- **현금지원**: 외국인투자촉진법(제14조의 2) 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 - 676)
  - 공장시설의 신설·증설, 연구개발 등을 위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
  - 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(기술성), 고용창출규모,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(산업성),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 고려
- **입지지원**: 외국인투자촉진법(제18조~제20조),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
  - 외국인투자지역 등 지정 후 혜택, 외투기업을 위한 입지 확보, 개발, 임대
- **기타지원**: 외국인투자촉진법(제13조~ 제13조의4),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
  - 국·공유재산 매각, 임대 및 임대료 감면 ,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등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- (1) 조세지원

## ▪ 조세지원 제도

적용대상	조세지원내용	관련조항
외국인투자기업	소득에 대한 법인(소득)세 감면 (*)	조특법121조의2②
	재산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감면	조특법121조의24⑤ 지특법8조의3
	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,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 면제	조특법121조의3①②
외국인기술자	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	조특법18
외국인근로자	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(19% 단일세율)	조특법18의2

(\*) 2018.12.31까지 조세감면신청분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- (1) 조세지원

## 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(취득세·재산세) 감면

- 외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

취득세 및 재산세 : 사업개시일로부터 3~5년간 100% 감면, 다음 2년간 50% 감면

- 단,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·재산세는,

취득세	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 재산에 대해 100% 감면
재산세	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~5년 동안 100%, 다음 2년간 50% 감면

- 조례에 의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거나,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음

## 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

-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서,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

- 1)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
- 2)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

- 관세 등의 면제는 **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는** 자본재에 한하여 적용

- 다만,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수입신고 완료가 어려울 경우,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 가능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- (1) 조세지원

## 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

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

- 다음과 같이 법에서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,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(2021.12.31 이전인 경우에 한함)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50% 감면

- 1)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
- 2)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

다만,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,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(2022.12.31 이전인 경우에 한함)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% 감면 + 다음 2년동안 50% 감면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- (1) 조세지원

## 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

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

-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(일용근로자 제외)이며, 고용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
-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(2021.12.31 이전인 경우에 한함)로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
- 다음 두 가지 과세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
  - 1) 국내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의 19% 단일세율 적용
  - 2) 종합소득세율 적용
- 단일세율은 2021.12.31. 이전의 국내 최초 근로제공분에 한하여 적용되나 (일몰조항), 외국인근로자가 외출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적용기한 없이 적용됨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- (2) 현금지원

## ■ 현금지원 제도

-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

근거규정	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 - 676)
지원기준	외국인투자비율 30% 이상 대상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
지원대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) 경영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 새로 설치or 증설</li><li>2. <b>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</b>(「산업발전법」 제5조) 경영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 새로 설치or 증설</li><li>3. 소재·부품 및 장비(「소재부품장비산업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) 생산 공장 시설 새로 설치or 증설</li><li>4. 현금지원 대상 업종별 신규고용 상시근로자수 초과 신규고용창출+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 새로 설치 or 증설</li><li>5.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, <b>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</b>, 소재부품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연구시설 새로 설치 or 증설 + 석사/3년 연구경력 학사/ 상시고용규모 5명</li><li>6. 그 밖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+ 외투위 지원 필요인정 (글로벌 헤드쿼터 등)</li></ol>

# 외국인투자 지원제도- (3) 입지지원

## ■ 입지지원 제도

- 외국인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지역, 자유무역지역, 경제자유구역으로 구분

### <주요 입지지원 제도 및 지정현황>

2019.12.31 기준

구분		근거	지정지역	현황
외국인 투자지역 FIZ	단지형	외국인투자촉진 법	천안, 대불, 사천, 오창, 구미, 장안1, 인주, 당동, 지사, 장안2, 달성, 오성, 천안5, 월전, 문막, 진천산수, 송산2, 국가식품(익산), 충주, 구미(부품), 포항(부품), 익산(부품), 창원(부품), 미음(부품), 송산2-1, 송산2-2, 광양세풍	27
	개별형		제조업(69개사), 물류업(2개사), 관광업(7개사), R&D(1개사)	79
	서비스형		서울(2), 대전(1)	3
자유무역지역 FTZ	산업단지형	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	울산, 동해, 군산, 김제, 대불, 울춘, 마산	7
	항만·공항형		부산항, 포항항, 평택·당진항, 광양항, 인천항, 인천국제공항	6
경제자유구역 FEZ		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	부산·진해, 광양만권, 인천, 황해, 대구경북, 동해안, 충북	7



# 감사합니다

김민경 전문위원  
공인회계사/세무사  
02-3497-1693  
minkyung.kim@kotra.or.kr